

<부가가치세법>

1. 영세율 적용대상 외국항행용역 범위 명확화(부가령 §32)(기존교재 : p42 맨위 ①) **시험관련 중요하지 않음**

현 행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외국항행사업자가 선박 또는 항공기로 여객·화물을 수송*하는 용역 * ①국내→국외, ②국외→국내, ③국외→국외 ○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화물을 국제 운송하는 용역 	<input type="checkbox"/> 영세율 적용 범위 명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등) ○ <u>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</u>

<개정이유> 영세율 적용범위 명확화

2.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범위 구체화(부가령 §100)(기존교재 : p137 맨위 가산세) **시험관련 중요하지 않음**

현 행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예식장업 ○ 부동산중개업 ○ 보건업(병원, 의원 한정) ○ 변호사업, 공인회계사업, 세무사업, 의사업, 약사업 등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제출 의무 업종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등) ○ <u>미디어 콘텐츠 창작업</u>

<개정이유> 과세기반 확충

<적용시기> '26.4.1.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<소득세법>

1.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(소득법 §59의4③)(기존교재 : p306 ④)**시험관련 매우 중요함**

현 행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○ (적용범위) 본인 및 아래 기본공제대상자 - 장애인(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음*) * 단,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18세 미만 한정 - 직계비속등(나이 요건 없으나 소득 요건* 있음) *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(총급여 500만원) 이하	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 확대 ○ (좌 동) - 소득요건 폐지

<개정이유>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

<적용시기> '26.1.1.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
2.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대상 및 한도 확대(소득법 §12, 소득령 §10의2)(기존교재 : p238 기타비과세 3번째 점)**시험관련 중요하지 않음**

현 행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대상 ❶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실업급여, 육아휴직급여 등 ❷ 「국가공무원법」, 「사립학교법」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❸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<추 가>	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 확대 ❶~❸ (좌 동) - 「사학연금법」 특례 적용 교직원이 정관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포함
<input type="checkbox"/>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한도 ❶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실업급여, 육아휴직급여 등: 한도 없음 ❷ 「국가공무원법」, 「사립학교법」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: 한도 없음 ❸ 사립학교 사무직원 또는 특례적용 교직원이 정관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: 월 150만원	<input type="checkbox"/> 한도 확대 ❶~❷ (좌 동) ❸ 휴직일 ~ 3개월: 월 250만원 4개월 ~ 6개월: 월 200만원 7개월 ~ : 월 160만원

<개정이유> 자녀 양육부담 완화

<적용시기> (비과세 대상) '26.1.1.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

(비과세 한도)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

3.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등 대상 확대(소득령 §17)(기존교재 : p236 맨밑에서 두 번째 칸 비과세)**시험관련 매우 중요함**

현 행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<input type="checkbox"/> 비과세 기준 - (월정액 급여*) 210만원 이하 * 봉급·급료·보수 및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연장근로·야간근로 등 급여를 뺀 금액 - (총급여액) 직전 과세기간 <u>3,000만원 이하</u> <input type="checkbox"/> 비과세 한도: 연간 240만원	<input type="checkbox"/> 비과세 대상 확대 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 - <u>260만원 이하</u> - <u>3,700만원 이하</u> 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

<개정이유>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

4.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(소득법 §129)(기존교재 : p255 ①, ②)**시험관련 중요함**

현 행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사적연금(본인 납입액 중 세액공제분 + 운용수익) 연금수령시 분리과세 세율 <input type="checkbox"/> 연금소득자 나이별 세율 * 연금수령일 기준 - 70세 미만: 5% - 70세 이상 80세 미만: 4% - 80세 이상: 3% <input type="checkbox"/> 사망까지 종신계약에 따라 연금수령 시: 4% * 종신계약시 수령나이별 세율과 4% 중 낮은 세율 적용 <input type="checkbox"/> 이연퇴직소득(회사 부담분) 연금수령시 분리과세 <input type="checkbox"/> 연금 수령연차에 따른 세액 (연금수령시 세액 감면) - 10년 이하: 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% - 10년 초과: 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60% 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종신계약시 세율 인하 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 <input type="checkbox"/> 4% → 3%로 인하 <input type="checkbox"/> 장기수령시 감면을 확대 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 - 10년 초과 20년 이하: 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60% - 20년 초과: 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50%

<개정이유> 노후생활 안정 지원

<적용시기> '26.1.1. 이후 연금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

5. 임목 벌채·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(소득법 §12)(기존교재 : p201 중간 (4))**시험관련 중요함**

현 행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임목 벌채·양도소득 비과세 ○ (대상) 조림기간 5년 이상 임지의 임목 벌채·양도소득 ○ (한도) 연 600만원	<input type="checkbox"/> 비과세 한도 확대 ○ (좌 동) ○ 연 3천만원

<개정이유> 임업 종사자 지원

<적용시기> '26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6.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(소득법 §12)(기존교재 : p236 맨밑 비과세)**시험관련 매우 중요함**

현 행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근로소득·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보육수당 ○ (대상)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○ (한도) 월 20만원	<input type="checkbox"/> 자녀 수에 따라 비과세 한도 확대 ○ (좌 동) ○ 자녀 1인당 월 20만원

<개정이유> 자녀 양육부담 완화

<적용시기> '26.1.1.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

7.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(소득법 §59의4③)(기존교재 : p306 ④, ㉠, ㉡)**시험관련 매우 중요함**

현 행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비 세액공제 ○ (공제율)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% 세액공제 ○ (공제대상) - (본인) 대학(원) 학비,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- (취학전 아동) 유치원· 어린이집 수업료, 학원비, 체육시설 교육비 등 - (초·중·고·대학생) 수업료, 교재비, 입학금, 대학입 학전형료, 수능응시료 등 <추 가>	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비 세액공제 ○ (좌 동) ○ 공제대상 확대 - (좌 동) - (좌 동) ■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(과제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 한정)

<개정이유> 자녀 양육부담 완화

<적용시기> '26.1.1.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
<input type="checkbox"/> 예능학원의 범위 ○ 「학원법 시행령」 별표2에 따른 예능(음악, 미술, 무용)을 교습과정으로 하는 학원
<input type="checkbox"/> 체육시설의 범위 ○ 「체육시설법」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* *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합기도장·국선도장·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유사한 체육시설 포함 ○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·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※ 현행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체육시설과 동일
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비의 범위 ○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(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)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 강료 ※ 현행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학원비와 동일

8.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합리화(조특령 §121의2)(기존교재 : p295 맨위 3째점 공제배
 제항목 추가) **시험관련 중요함**

현 행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제외하 는 교육비 ○ 학교(대학원 포함)·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 료·입학금·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div>	<input type="checkbox"/> 제외대상 추가 ○ (좌 동) ○ 평생교육시설·학교 외 기관의 학위취득과정 수 업료 ○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

<개정이유> 중복지원 정비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

9. 폐업 개사육농가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범위 확대(소득령 별표1)(기존교재 : p201 맨위 (1) ①) **중
 요하지 않음**

현 행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비과세되는 농가부업규모축산의 범위 ○ 가축별 규모 - 젖소·소 50마리, -돼지 700마리 - 산양·면양 300마리-토끼 5,000마리 - 닭·오리 15,000마리- 양봉 100군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div>	<input type="checkbox"/> 농가부업규모 축산 범위 확대 ○ (좌 동) - 개 400마리(단, '27년말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)

<개정이유> 「개식용종식법」에 따른 폐업농가 지원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10.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(소득령 §26의3)(기존교재 : p186 (3) 위어케 추가예정)시
 험관련하여 중요함

현 행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○ 「상법」 §461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<신 설> - 다만,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	<input type="checkbox"/>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제외 범위 조정 ○ (좌 동) - 대주주등*의 경우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 제외 →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세 과세 * ①상장법인의 대주주 ②비상장법인 주주(중소·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) - (좌 동)

<개정이유> 자본준비금 배당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

<추가내용>

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: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배당소득에 불포함 되나, 다음은 배당소득에 포함됨

- ㉠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
- ㉡ 3% 재평가세율 적용분 재평가적립금
- ㉢ 적격합병·분할에 따른 합병·분할차익 중 승계된 3% 재평가세율 적용분 재평가적립금

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이거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받은 배당금액은 해당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.

11.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(소득법 §97의2①)(기존교재에 내용 없음)

현 행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양도소득세 이월과세* 적용배제 범위 *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10년(주식의 경우 1년) 내 양도시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 ○ 증여자인 배우자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<추 가>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배제 범위 확대 ○ (좌 동) ○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

<개정이유>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

<적용시기> '26.1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<법인세법>

1. 법인세율 환원(법인법 §55①)(기존교재 : p380~p381, p580)**시험관련하여 매우 중요함**

현 행		개 정	
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세율 및 과표구간		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세율 상향 조정	
과 표	세 율	과 표	세 율
0~2억원	9%	0~2억원	10%
2~200억원	19%	2~200억원	20%
200~3,000억원	21%	200~3,000억원	22%
3,000억원 초과	24%	3,000억원 초과	25%

<개정이유>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

<적용시기> '26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2. 공익법인 범위에서 외국 종교단체 제외(법인령 §39①)(기존교재에 없음)**중요하지 않음**

현 행		개 정	
<input type="checkbox"/>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 범위		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 종교단체 제외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- 비영리법인 소속 단체 포함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- 비영리법인 소속 국내 소재 단체로 한정 	

<개정이유> 조세회피 방지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

3. 상품 등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합리화(법인령 §68①, 소득령 §48)(기존교재 : p528 (1) 2째칸 손익 귀속시기 추가)**중요하지 않음**

현 행		개 정	
<input type="checkbox"/> 자산 판매손익 등의 귀속 사업연도		<input type="checkbox"/> 조건부·기한부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합리화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품 등의 판매: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<li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단서 신설>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품 등을 조건부·기한부 판매한 경우: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 	

<개정이유> 납세편의 제고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

4.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기부금 손금인정 확대(법인법 §24③)(기존교재 : p519 (3) 일반기부금 한도액)**시험관련해서 중요함**

현 행		개 정	
<input type="checkbox"/> 기부금 손금산입한도		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상향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특례기부금) 소득금액 × 50% ○ (일반기부금) (소득금액-특례기부금) × 10% - 사회적기업의 경우 20%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○ (좌 동) - 20% → 30% 	

<개정이유> 사회적기업의 기부 활성화 지원

<적용시기> '26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<조세특례제한법>

1.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(조특법 §95의2)(기존교재 : p310 (3)표안 공제대상자 추가) **시험관련해서 중요함**

현 행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 ※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 - 세대주가 주택 관련공제*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* 월세세액공제,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, 주택임차자금 차입원리금 공제 등 <추 가> <input type="checkbox"/> 월세 세액공제 한도 ○ 연간 월세액 1,000만원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대상 추가 ① (좌 동) ②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“세대주의 배우자”로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 (i) 세대주와 배우자 주소지가 각기 다른 시군구에 있을 것 * 임대차계약증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 (ii)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등*이 무주택자일 것 *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,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<input type="checkbox"/> 한도 계산시 세대주.배우자 월세액 합산 ○ ① + ② 합산 연간 월세액 1,000만원

<개정이유> 서민·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

<적용시기> '26.1.1.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
2. 다자녀 가구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면적 확대(조특령 §95)(기존교재 : p310 (3)표안 공제대상자 면적) **시험관련해서 중요함**

현 행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주택 ○ 국민주택규모*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 * 85㎡(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㎡) 이하	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주택 범위 확대 ① 기본공제대상 자녀* 3인 이상 : 주택면적 100㎡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 * 자녀(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) 및 손자녀 ② ① 외의 경우 : 국민주택규모*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 * 85㎡(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㎡) 이하

<개정이유>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
3.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(조특법 §126의2)9기존교재 : p294 맨밑 한도) **시험관련해서 중요함**

현 행	개 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공제대상) 총급여의 25%초과 사용금액 ○ (공제율) 결제수단·대상별 차등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 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제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① 신용카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5%</td> </tr> <tr> <td>② 현금영수증·체크카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0%</td> </tr> <tr> <td>③ 전통시장·대중교통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0%</td> </tr> <tr> <td>④ 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·영화관람료·체육시설이용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④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공제한도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총급여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천만원 이하자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천만원 초과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제한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50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추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통시장</td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00</td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0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중교통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한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도서공연등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적용기한) '25.12.31. 	구 분	공제율	① 신용카드	15%	② 현금영수증·체크카드	30%	③ 전통시장·대중교통	40%	④ 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·영화관람료·체육시설이용료	30%	총급여		7천만원 이하자	7천만원 초과자	공제한도		300	250	추가	전통시장	300	200	공제	대중교통	한도	도서공연등	-	-	<input type="checkbox"/> 자녀 수에 따라 공제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등) ○ 자녀 1명당 기본공제 한도 50만원(최대 100만원) 상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,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(최대 50만원) 상향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총급여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천만원 이하자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천만원 초과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제한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50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자녀 1명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5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75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자녀 2명 이상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00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추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통시장</td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00</td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0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중교통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한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도서공연등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28.12.31. 	총급여		7천만원 이하자	7천만원 초과자	공제한도		300	250	자녀 1명		350	275	자녀 2명 이상		400	300	추가	전통시장	300	200	공제	대중교통	한도	도서공연등	-	-
구 분	공제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① 신용카드	1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② 현금영수증·체크카드	3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③ 전통시장·대중교통	4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④ 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·영화관람료·체육시설이용료	3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급여		7천만원 이하자	7천만원 초과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제한도		300	25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추가	전통시장	300	2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제	대중교통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한도	도서공연등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급여		7천만원 이하자	7천만원 초과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제한도		300	25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자녀 1명		350	27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자녀 2명 이상		400	3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추가	전통시장	300	2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제	대중교통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한도	도서공연등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<개정이유> 자녀 양육부담 완화

<적용시기> '26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

4.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(조특법 §58)(기존교재 : p309 (2) ①) **시험관련해서 매우 중요함**

현 행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기부대상) 기부자의 거주자 외 지방자치단체 ○ (세액공제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10만원 이하) 110분의 100 - (10만원 초과) 15% ▪ (예외) 특별재난지역에 기부시 10만원 초과분 30%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선포일로부터 3개월내 기부 한정 ○ (기부·공제한도) 2천만원 	<input type="checkbox"/> 세액공제율 상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등) - (10만원 초과~20만원 이하) 40% <li style="padding-left: 20px;">(20만원 초과~2천만원 이하) 15% ▪ (예외) 특별재난지역에 기부시 20만원 초과분 30%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선포일로부터 3개월내 기부 한정 ○ (좌 등)

<개정이유> 지역균형발전 지원

<적용시기> '26.1.1.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

5.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(조특법 §104의27 신설)(기존교재에 없음) **시험관련해서 매우 중요함**

현행	개정								
<신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대상) 고배당 상장법인* 주주(거주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① 또는 ② 충족 법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배당성향 40% 이상 ② 배당성향 25%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% 이상 배당 증가 - (제외) 공모·사모펀드, 리츠, 투자목적회사(SPC) 등 ○ (과세특례)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대상) 현금배당액(중간·분기·결산배당 포함) - (적용세율) 3단계 누진세율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과세표준</td> <td>2천만원 이하</td> <td>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</td> <td>3억원 초과</td> </tr> <tr> <td>적용세율</td> <td>14%</td> <td>20%</td> <td>35%</td> </tr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적용기간) '28.12.31.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까지 	과세표준	2천만원 이하	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3억원 초과	적용세율	14%	20%	35%
과세표준	2천만원 이하	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3억원 초과						
적용세율	14%	20%	35%						

<개정이유>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제고

<적용시기> '26.1.1.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

6.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(조특령 §104의5)기존교재 : p126 중간, p310 맨밑) **시험관련해서 매우 중요함(부가가치세위주로)**

현행	개정															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신고 세액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대상) 전자신고의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자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납세자, 세무대리인·세무법인 등 ○ 세액공제 기준금액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소득세</td> <td>2만원</td> </tr> <tr> <td>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</td> <td>1만원 중 적은 금액</td> </tr> <tr> <td>법인세</td> <td>2만원</td> </tr> <tr> <td>부가가치세</td> <td>1만원</td> </tr> <tr> <td>양도소득세(예정신고)</td> <td>2만원</td> </tr> </table>	소득세	2만원	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	1만원 중 적은 금액	법인세	2만원	부가가치세	1만원	양도소득세(예정신고)	2만원	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등) ○ 세액공제 기준금액 인하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소득세</td> <td>1만원</td> </tr> <tr> <td>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</td> <td>5천원 중 적은 금액</td> </tr> <tr> <td>법인세</td> <td>1만원</td> </tr> <tr> <td>부가가치세</td> <td>5천원</td> </tr> <tr> <td>양도소득세(예정신고)</td> <td>(좌 등)</td> </tr> </table>	소득세	1만원	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	5천원 중 적은 금액	법인세	1만원	부가가치세	5천원	양도소득세(예정신고)	(좌 등)
소득세	2만원																				
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	1만원 중 적은 금액																				
법인세	2만원																				
부가가치세	1만원																				
양도소득세(예정신고)	2만원																				
소득세	1만원																				
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	5천원 중 적은 금액																				
법인세	1만원																				
부가가치세	5천원																				
양도소득세(예정신고)	(좌 등)																				

<개정이유> 전자신고 정착에 따른 지원 수준 합리화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7. 지역사랑상품권 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 §136)(기존교재 : p446 맨밑 ⊖ 추가) **시험 관련해서 중요함**

현 행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인정 특례 ○ (추가 손금산입 한도) ① 문화비 지출분: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% ② 전통시장 지출분*: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10% *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 ○ (적용기한) '25.12.31.	<input type="checkbox"/> 특례대상·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○ (좌 등) ① (좌 등) ②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*: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% *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 ○ '28.12.31.

<개정이유>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

<적용시기> '26.1.1.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8.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신설(조특법 §108)(기존교재 : p102 맨밑)
시험관련해서 매우 중요함

현 행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재활용폐자원,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 매입세액공제 ○ (요건)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·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·가공·공급하는 경우 ○ (공제대상) 재활용폐자원, 중고차 취득가액 ○ (공제율) 폐자원: 3/103, 중고차: 10/110 ○ (공제한도) - 폐자원: 매출액의 80% - 세금계산서 매입액 <신 설> ○ (적용기한) '25.12.31.	<input type="checkbox"/> 중고자동차에 대한 공제한도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○ (좌 등) - 중고차: 매출액 - 세금계산서 매입액 ※ 2개 과세기간(1년)간 이월공제 허용 ○ '28.12.31.

<개정이유>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의 합리화

<적용시기> '26.7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

<국세기본법>

1.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(국기법 §10, 국기령 §5의2)(기존교재 : p634 1) ②) **시험관련 해서 매우 중요함**

현 행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납부고지서 우편송달 방법 ○ (원칙) 등기우편 ○ (예외) 일반우편 - 요건 : 고지세액 50만원 미만 - 대상 : ①~③의 납부고지서 ①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②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예정고지세액의 납부고지서 ③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후 무(과소)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<추 가>	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우편 송달범위 확대 ○ (좌 동) ○ 일반우편 송달 기준세액 상향 및 대상 추가 - 50만원 → 100만원 - ①~④의 납부고지서 ①~③ (좌 동) ④ 소득세·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이후 무(과소) 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

<개정이유> 행정비용 절감 및 납세편의 제고

<적용시기> (대상 확대) '26.1.1.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 분부터 적용

(기준세액 상향) 영 시행일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 분부터 적용

2.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편(국기법 §47의4·§47의5)(기존교재 : p136 맨밑, p335, p606, p699 납부지연가산세) **시험관련해서 매우 중요함**

현 행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납부지연 가산세(①+②) ① 지연 이자 상당액 - 법정납부기한 ~ 납부일* : 매 1일(日) 경과시마다 미납세액 × 0.022% * 납부고지일 ~ 지정납부기한 기간 제외 ② 체납에 대한 제재 - 미납세액 × 3%	<input type="checkbox"/> 지연이자 계산 방식 개편 ① 체납 이후 산출 단위 변경 - 법정납부기한 ~ 납부고지일(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 납부일)의 전날 : 매 1일(日) 경과시마다 미납세액 × 0.022% - 지정납부기한 ~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: 매 1월(月) 경과시마다 미납세액 × 0.67% ② (좌 동)

<개정이유> 납세편의 제고

<적용시기> '26.7.1.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

<경과조치> '26.6.30. 이전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액계산은 종전 규정을 적용

3.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(국기법 §21·§47의4·§47의5)(기존교재 : p136 맨밑, p335, p606, p699 납부지연가산세) **시험관련해서 매우 중요함**

현 행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납부지연 가산세(①+②) ① 지연 이자 상당액* *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·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② 체납에 대한 제재 - 미납세액 × 3% <추 가>	<input type="checkbox"/> 독촉장 송달비용 추가(①+②+③)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○ (좌 등) </div> ③ 독촉장 송달비용 ※ (1) 전자송달은 비용 없음 (2)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·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(3) 지정납부기한 경과시 송달비용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

<개정이유> 과세형평 제고

<적용시기> '26.7.1.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